# 「매봉·포이시니어센터」 민간위탁(재위탁, 신규위탁) 동의안

# 심사보고서

| 의안 번호 | 657 |
|---|---|

2025. 11. 26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11. 11. 강남구청장(어르신복지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6.) 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생활국장 : 이용달)

가. 제안이유

○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매봉시니어센터 운영 법인과 협약기간 만료 및 포이시니어센터 신규위탁에 따라, 매봉시니어센터 및 포이시니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1개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.

○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및 신규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매봉·포이시니어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 근거

· 노인복지법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
·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·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·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- 민간위탁 지속 및 신규위탁 필요성

· 신규 시니어센터 설치 필요성

노인인구의 증가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확충이 필요함.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센터 설치를 통해 운동, 문화, 취미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· 시니어센터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

시니어센터는 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특성과 복잡한 욕구를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하고, 민·관 협력 체계 구축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이 적합함.

· 운영·관리상의 효율성 제고

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·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, 특히 거리가 가까운 2개의 시설을 1개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최소 직원 배치 및 시설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. 수혜자 특성·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·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.

○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매봉시니어센터, 포이시니어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
-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,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, 건강생활지원, 노년사회화 교육, 지역자원 및 조직화, 사회참여 및 공익증진 관련 사업
-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현황

| 시설명 | 소재지 | 규모 | 시설배치 |
|---|---|---|---|
| 매봉시니어센터 | 남부순환로378길 20(도곡동) | 358.46㎡ (지하1층~지상1층) | 프로그램실, 북카페, 사무실 |
| 포이시니어센터 | 논현로16길 11(개포동) | 344.64㎡ (지상1층) | 프로그램실, 스크린파크골프장, 사무실, 경로당 |

- 인력현황 : 6명

| 계 | 센터장 | 매봉시니어센터 | 포이시니어센터 |
|---|---|---|---|
| 6명 | 1명 | 3명 | 2명 |

- 이용대상 : 관내 60세이상 어르신(매봉 : 월 2,500명)

○ 민간위탁 기간 : 5년 (2026. 3. 1. ~ 2031. 2. 28.)

-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## 다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○ 노인복지법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### Ⅰ. 동의안 제출 배경

○ 본 동의안은 매봉시니어센터와 포이시니어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
***[참고]*** **안건 철회 및 재제출 경위**

- 2025. 11. 6. 강남구청장으로부터 “「매봉·포이시니어센터」 민간위탁(재위탁, 신규위탁) 동의안(의안번호 제645호)”이 제출되었으나, 2025. 11. 11. 헤당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고, 같은 날 본 건(의안번호 제657호)이 제출되어 2025. 11. 12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의안번호 제645호 동의안(철회 건)과 의안번호 제657호 동의안(본 건)의 차이점은 시설명과 인력현황 정정임. 의회 안건 제출 시 주의 필요해 보임.

| 철회 건(의안번호 제645호) | 본 건(의안번호 제657호) |
|---|---|
| 라. 위탁시설 개요<br>○ 시설현황 | 라. 위탁시설 개요<br>○ 시설현황 |

| 시설명 |
|---|
| 매봉시니어센터 |
| 선정시니어센터 |

| 시설명 |
|---|
| 매봉시니어센터 |
| 포이시니어센터 |

○ 인력현황

| 포이시니어센터 |
|---|
| 5명 |

○ 인력현황

| 포이시니어센터 |
|---|
| 2명 |

○ 본 건 동의안은 형식면에서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라 한다) 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)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제출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,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“적정”으로 제출됨.

### Ⅱ. 주요 사항의 검토

○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인 시니어센터는 「서울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어른신복합문화시설로 강남구는 지난 2023년부터 신축 경로당을 어르신복합문화공간인 시니어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.

**[강남구 시니어센터 현황]**

| 시설명 | 소재지 | 개관일 | 운영 |
|---|---|---|---|
| 삼성시니어센터 | 봉은사로111길 18-3 (삼성동) | 2025. 03. 12. | 민간위탁 |
| 선정시니어센터 | 역삼동 683-19 | 2025. 10. 31. | |
| 매봉시니어센터 (舊 70+라운지) | 남부순환로378길 20(도곡동 | 2019. 11. 04. | |
| 학리시니어센터 | 학동로47길 30 (논현동 | 2023. 12. 08. | |
| 은곡시니어센터 | 헌릉로571길 48 (세곡동) | 2024. 12. 26. | |

(자료: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)

○ 금번 민간위탁 대상 시니어센터는 위탁기간 만료(2026. 6. 30.) 예정인 매봉시니어센터와 신규 운영 예정인 포이시니어센터이며 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**[매봉·포이시니어센터 시설 현황]**

| 시설명 | 소재지 | 시설규모 | 추진현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매봉시니어센터 | 남부순환로378길 20(도곡동) | 358.46㎡ (지하1~지상층) | 재위탁 | 임차 |
| 포이시니어센터 | 논현로16길 11(개포동) | 344.62㎡ (지상1층) | 신규위탁 | 임차 |

(자료: 어르신복지과)

○ 동의안에 따르면 거리상 인접한 위 시니어센터 2개소를 동일 수탁기관 위탁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5년(2026. 3. 1. ~ 2031. 2. 28.)으로 제출되었음. 그런데, 매봉시니어센터의 경우 현 운영법인과의 위탁기간이 2021. 7. 1.부터 2026. 6. 30.까지인데 본 동의안에 따른 위탁기간이 기존 운영법인과의 위탁계약기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법적 다툼 소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.

○ 또한,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1개 법인에 위 시니어센터 2개소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에 따른 시설장의

상근 의무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부서 설명 요구됨.

○ 한편, 민간위탁 조례 제19조(성과평가)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. 기 위탁 운영 시설인 매봉시니어센터 대해서는 2025년 9월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90.6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'적정' 판정을 받음.

○ 다만, 최근 3년간 매봉시니어센터의 회계점검 결과(아래 표)에서 보듯 매봉시니어센터 운영에 있어 여러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는바,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도 감독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**[매봉시니어센터 회계점검 결과]**

| 연 도 | 지적사항 | 시설 조치결과 |
|---|---|---|
| 2022 | 1. 2021년 3차 및 4차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원천세 신고를 누락함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당 기타소득 신고내역이 없음. 운영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, 원천세를 신고(기타소득 등)하여야 하나, 이를 수행하지 아니함 | 1. 지도점검 후 2022년 운영위원회 회의비 등 지급되는 수당은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하였고, 앞으로도 원천세 신고는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|
| | 2. 2021년 1월 급여 중 일부 금액(제수당)을 2월에 지급함. 법인전입금으로 부담처리 할 금액으로서, 1월에 법인 전입금이 전입되지 아니하여 2월에 지급하였으나, 직원에 대한 급여는 해당 일자에 지급할 것을 권고함 | 2. 종사자 급여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해당월에 지급하겠음 |
| | 3. 북카페 수입 중 카드결제를 통한 수입의 경우, 카드지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. 카드결제 사업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카드지급수수료를 별도의 세출로 인식할 것을 권고함 | 3. 현재 북카페 수입금 중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, 앞으로는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세입처리하고 별도로 카드수수료를 세출하여 회계 관리하도록 시정하겠음 |
| 2023 | 1. 구청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의 2022년 승인받은 세입세출 결산서상 결산금액이 실제 세출결산 금액과 상이함 | 1.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결산금액(차기이월금 제외됨)과 차기이월금이 포함된 법인이사회 회의록의 |

| 연 도 | 지적사항 | 시설 조치결과 |
|---|---|---|
| | (사유는 반납금 등 모두 포함하여 예산금액으로 승인을 받음) | 결산금액이 상이함에 대해 법인과 협의하여 구청에 제출하는 결산금액과 법인이사회 회의로 결산금액이 동일하도록 조치하겠음 |
| | 2. 보조금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여 반납 혹은 세입처리하여 관리하여야 함. | 2. 현재 사용 중인 신한카드의 경우 발생되는 포인트에 대해 입금처리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관할 지자체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현금화되는 부분이므로 이자로 세입처리 후 보조금 반납시 반납하도록 하겠음 |
| | 3. 운영위원회 수당지급시 사회복지법인 봉은 소속의 구성원은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나 지역대표로 기재하여 이를 지급함. | 3. 지역대표로 기재하여 수당 지급한 봉은 소속의 구성원에게 수당이 미지급하겠음 |
| 2024 | - 수의계약 진행 시 비교 견적서 미비 항목들이 발견됨(견적서 날짜 누락, 유효기간 만료 등) | -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100만원 이상 지출시 견적 및 타견적서류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있음. 수의계약 진행시 견적서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여 미비 항목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 |

(자료: 어르신복지과)

## Ⅲ. 종합의견

○ 시니어센터는 단순 휴식 공간이 아닌 어르신 수요에 맞는 문화여가지원, 정서지원, 건강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. 또한 이미 다른 시니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사료 됨.

○ 아울러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여부를 동의하는 것이므로 동의안 가결 후 위탁업체 선정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, 시니어센터가 어르신 문화여가복지 증진이라는 그 설치 취지에 맞게 원

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「매봉·포이시니어센터」 민간위탁(재위탁, 신규위탁) 동의안. 끝.

# 「매봉·포이시니어센터」 민간위탁(재위탁, 신규위탁) 동의안

| 의 안 번 호 | 657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제 출 자 : 강남구청장
제 출 부 서 : 어르신복지과

## 1. 제안이유

가.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매봉시니어센터 운영 법인과 협약기간 만료 및 포이시니어센터 신규 위탁에 따라, 매봉시니어센터 및 포이시니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1개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.

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및 신규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**가. 위탁사무명** : 매봉·포이시니어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**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**

○ 추진 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○ 민간위탁 지속 및 신규위탁 필요성

- 신규 시니어센터 설치 필요성

노인인구의 증가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확충이 필요함.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센터 설치를 통해 운동, 문화, 취미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적·정신적

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- **시니어센터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**

  시니어센터는 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특성과 복잡한 욕구를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하고, 민·관 협력 체계 구축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이 적합함.

- **운영 · 관리상의 효율성 제고**

 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·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, 특히 거리가 가까운 2개의 시설을 1개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최소 직원 배치 및 시설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. 수혜자 특성·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·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.

## 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매봉시니어센터, 포이시니어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
-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,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, 건강생활지원, 노년사회화교육, 지역자원 및 조직화, 사회참여 및 공익증진 관련 사업
-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
## 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시설현황

| 시설명 | 소재지 | 규모 | 시설배치 |
|---|---|---|---|
| 매봉시니어센터 | 남부순환로378길 20<br>(도곡동) | 358.46㎡<br>(지하1층~지상1층) | 프로그램실, 북카페,<br>사무실 |
| 포이시니어센터 | 논현로16길 11(개포동) | 344.64㎡<br>(지상1층) | 프로그램실, 스크린파크<br>골프장, 사무실, 경로당 |

○ 인력현황 : 6명

| 계 | 센터장 | 매봉시니어센터 | 포이시니어센터 |
|---|---|---|---|
| 6명 | 1명 | 3명 | 2명 |

○ 이용대상 : 관내 60세이상 어르신(매봉 : 월 2,500명)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| - 매봉시니어센터 | | |
|---|---|---|
|  |  |  |
| **지역여건** | - 행정구역상 도곡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,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중간에 위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된 지역임<br>-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, 주변에 다수의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남 | |

| - 포이시니어센터 | | |
|---|---|---|
|  |  |  |
| **지역여건** | - 행정구역상 개포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, 상업지역이 일부 혼합된 주택가 지역임<br>- 개포동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음<br>- 반경 1㎞이내 지하철역은 없으나, 주변에 다수 버스 노선이 운행됨 | |

**마. 민간위탁 기간** : 5년 (2026. 3. 1. ~ 2031. 2. 28.)

-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
**바. 수탁자 선정방식**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

**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원가계산서)**

| 구 분 | | | 금 액 | 구성비(%) | 산 출 근 거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출원가 | ①인건비(노무비) | 기 본 급 | 222,230,000 | 41.1 | 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[별표7]<br>- 2025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<br>-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|
| | | 제수당 연장근무수당 | 8,572,000 | 1.6 | |
| | | 제수당 야간근로수당 | 0 | 0 | |
| | | 제수당 휴일근로수당 | 0 | 0 | |
| | | 제수당 연차수당 | 0 | 0 | |
| | | 제수당 관리자수당 | 2,400,000 | 0.4 | |
| | | 제수당 가족수당 | 2,020,000 | 0.4 | |
| | | 제수당 정액급식비 | 8,840,000 | 1.6 | |
| | | 제수당 명절휴가비 | 20,068,200 | 3.7 | |
| | | 상여금 | 0 | 0 | - |
| | | 퇴직충당금 | 23,099,220 | 4.3 | -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|
| | | 기타후생경비 | 1,900,000 | 0.4 | |
| | |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| 9,050,050 | 1.7 | |
| | |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| 11,488,060 | 2.1 | |
| | | 보험료 고용보험료 | 4,467,580 | 0.8 | |
| | | 보험료 산재보험료 | 2,067,560 | 0.4 | |
| | |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| 1,171,990 | 0.2 | |
| | | **소 계** | **317,374,660** | **58.8** | |
| | ②운영비(경비) | 여비(국내/국외) | 880,000 | 0.2 | - 2025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|
| | | 교 육 훈 련 비 | 936,000 | 0.2 | - 직접 소요비용 계상 |
| | | 임 차 료 | 0 | 0 | - |
| | | 우 편 통 신 비 | 3,450,000 | 0.6 | - 직접 소요비용 계상 |
| | | 유 인 물 비 | 1,900,000 | 0.4 | |
| | | 소 모 품 비 | 8,989,000 | 1.7 | |
| | | 수 선 유 지 비 | 13,153,000 | 2.4 | |
| | | 차 량 유 지 비 | 0 | 0 | - |
| | | 공공요금 및 제세 | 9,704,000 | 1.8 | - 직접 소요비용 계상 |
| | | 기 타 경 비 | 40,039,000 | 7.4 | |
| | | **소 계** | **79,051,000** | **14.6** | |
| | ③ 사 업 비 | | **143,693,310** | **26.6** | -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|
| **지출원가 합계(Ⓐ=①+②+③)** | | | **540,118,970** | **100** | |
| 수입원가 | ④ 입장료 · 이용료 | | 0 | 0 | - |
| | ⑤ 사용료 | | 0 | 0 | - |
| | ⑥ 기타수입 | | 0 | 0 | - |
| **수입원가 합계(Ⓑ=④+⑤+⑥)** | | | **0** | **0** | |
| **위탁비용(Ⓐ-Ⓑ)** | | | **540,118,970** | **100** | |

**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**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노인복지법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·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· 보급하여야 한다.
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# 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#### 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제5조(승인 및 동의)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,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.

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행정7급 권미경(☏ 3423-5904)